

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질의에 대한 답변

Q1

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, 제11조제2호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의 법 적용 대상 여부

- ① 위탁·계약체결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법 적용대상 여부
-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법 적용대상 여부

- A. -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상의 '공공기관' 또는 '공무수행사인'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- 법령(조례 포함)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봄(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)

Q2

사회복지관이 법 적용대상일 경우, 후원금·품 관련 법 저촉 여부

- ① 후원금·품 개발을 위한 티켓 사전 제작, 판매, 배포 가능여부 및 판매 대상(기관 이용자, 강사, 주요 거래처 등)의 범위
- ② 기념품 제작 시 후원처명, 주최기관 등 명기
- ③ 자원봉사자, 후원자 관리를 위한 행사에서 식사, 선물 등 제공 가능 여부
- ④ 거래 업체로부터 후원금·품을 받는 경우(식자재 납품 업체, 마트, 은행 등) 법 저촉 여부

A. (①, ②, ④ 관련)

- 사회복지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의 후원금품 모집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

- 사회복지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, 사회복지관(시설의 장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5조에 따라 후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, 사회복지관(시설의 장)이 기념품을 후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함

(③ 관련)

자원봉사자나 후원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, 설령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

■ 사회복지사업법

제45조(후원금의 관리)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(이하 "후원금"이라 한다)의 수입·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26.>

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,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,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1.2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Q3

사회복지관의 후원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예외사항 적용에 따른 구체적 해석

○ 사회복지관의 후원행사(티켓판매)시 법 저촉여부에 대한 구청 질의 결과

-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의 주요 업무인 단체가 기부를 안내, 권유하고 기부금품을 받는 것은 허용되며,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, 이를 기부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.(양천구청)

- ① 사회복지관 후원금품 모집 및 관리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의해 예외사항 적용 여부

② 위와 같이, ‘기부를 안내, 권유’의 의미와 ‘기부를 강요하거나 요구’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

A. (① 관련)

질문 2.의 ①, ②, ④관련 답변 참조

(② 관련)

‘기부의 안내, 권유’란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, ‘기부를 안내, 권유’ 하는 것인지 아니면 ‘기부를 강요하거나 요구’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